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나61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선

담당변호사 류선화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경열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1. 1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단523886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57,304,3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7,304,3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38,628,5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18,628,5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6.부터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628,5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18,628,5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6.부터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에 대한 대금 및 신탁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채무초과상태에서 2017. 9. 13.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7. 9. 27. AB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였는바, 2017. 9. 13. 체결된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38,628,5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18,628,5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6.부터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합계 38,628,500원(= 20,000,000원 + 18,628,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이 있고, 이는 각 2017. 7. 6. 및 2017. 7. 20. 체결한 약정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8. 31. C로 마쳐졌다가 2017. 9. 13.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 역시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C가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가 설립될 때까지 L가 C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중 1명이 L이고, L가 매매대금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L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는 2017. 4. 18. C에게 투자금액의 2배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토지 매입자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2017. 6. 28. L 및 C를 공동매수인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L가 매도인에게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L는 위 매매대금을 C에 대여해준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L는 2017. 9. 1.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가 2017. 9. 5. 설립될 당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L는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받기 위하여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L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과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L 또는 설립 전 피고가 매수하여 C에 사실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고).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2017.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9. 26. AB에 2017. 9. 2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나아가 가액배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57,304,318원[= 38,628,500원 + 10,216,438원(= 20,000,000원에 대한 2018. 7. 21.부터 2021. 12. 14.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 8,459,380원(= 18,628,500원에 대한 2018. 7. 21.부터 2021. 12. 14.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57,304,3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진원, 판사 이상률, 판사 윤동연

별지1

목 록

1. 토지

강원도 속초시 AD 대 106㎡

2. 건물

강원도 속초시 AD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7.26㎡.

별지2

목 록

1. 토지

강원도 속초시 AE 대 109㎡

2. 건물

강원도 속초시 AE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28.63㎡.

별지3

목 록

1. 토지

강원도 속초시 AF 대 50㎡

2. 건물

강원도 속초시 AF, AG AH호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41.4㎡

2층 41.4㎡. 끝.

